

위원회 규정 신·구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제 21 장 국책사업위원회		
	제63조(국책사업위원회) 대학의 국책사업 추진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책사업위원회를 둔다.	
(신설)	<p>제6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, 기획처장, 교무처장, 입학학생처장, 연구처 국책사업 대응 전담 위 장, 산학처장, 학술정보처장, 행정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</p> <p>③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교·내외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</p>	위원회 신설
	<p>제6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자문·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책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 및 분석 2. 사업별 추진 방향 및 주체 구성 3. 사업 운영 및 개선 관련 사항 4. 기타 국책사업 수주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	